

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(주민대표) 및 위원

후보자 등록 공고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 및 ‘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’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)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(이하 “위원 등”이라 한다)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19일

은 평 구



1. 선출(선임)대상 : 부위원장(주민대표) 1명 - 선출
위원 37명~45명 - 공공지원자가 선임
2. 등록기간 : 2026. 01. 21.(수) ~ 2026. 01. 29.(목) 10:00~17:00 [토·공휴일 제외]
※ 기간 중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
3. 등록장소 : 응암동 75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사무실
(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15, 2층)
4. 후보자 등록시 제출서류
 - 가. 부위원장(주민대표) 후보자
 - 1)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.(제2호 서식)
 - 2) 후보자 추천서 1부.(제4호 서식)
※ 공공지원자의 날인이 된 추천서 양식 사용
 - 3)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출에 따른 이행각서 1부.(제6호 서식)
 - 4) 선거공보 작성(안) 1부 및 전산파일(원본 및 PDF파일 1부).(제10호 서식)
 - 5) 후보자 정견서 1부.(제11호 서식)

- 6)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 1부.(제8호 서식)
- 7)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1부.
- 8)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초본,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 등)
- 9)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공문서(※해당자에 한함)
- 10)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제1호 서식)
- 11) 범죄경력·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1부(제9호 서식)

나. 위원 후보자

- 1)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.(제3호 서식)
- 2) 후보자 추천서(제5호 서식)
 - ※ 공공지원자의 날인이 된 추천서 양식 사용
- 3)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에 따른 이행각서(제7호 서식)
- 4)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(제5호 서식)
- 5)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1부
- 6)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(등기부등본 등)
- 7)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(제1호 서식)
- 8) 범죄경력·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1부(제9호 서식)

※ 제출서류 중 서식은 공공지원 사무실, 은평구청 홈페이지,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,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공공지원 사무실(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15, 2층)에 비치할 예정이오니 방문하여 작성 가능합니다.

5. 후보자 등록 자격

가. 부위원장(주민대표) 후보

- 1) 등록요건: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토지등소유자
(※ 중복추천 불가, 각 후보별[주민대표(부위원장)] 토지등소유자 1인이 2인 이상 추천한 경우, 우선 접수한 추천인만 인정. 공동소유자일 경우 대표소유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함)

2) 자격기준

- 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(다만, 거주 목적의 아님 상가 등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)

- ②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
※ 단, 소유권을 2인 이상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.

나. 위원 후보

- 1) 등록요건 :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토지등소유자
(※ 최대 2인 중복추천 가능, 각 후보별(위원) 토지등소유자 1인이 2인을 초과하여 추천한 경우, 우선 접수한 후보자의 추천인만 인정. 공동소유자일 경우 대표소유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함)

다. 결격 사유 및 자격상실 기준(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)

- 1)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4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5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

6. 후보자 자격심사

가. 심사기간 : 2026. 01. 30.(금) ~ 2026. 02. 06.(금)

나. 심사내용

- 1) 결격사유 신원조회, 적격요건 확인, 등록요건 충족여부 심사 등
- 2) 겸임여부 조회(※ ‘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’ 제12조 제2항)

7. 부위원장(주민대표) 선출 일정 및 방법

가. 선출 일정(※ 선출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- 1) 기호 배정 : 2026. 02. 06.(금) 14시 / 응암동755번지 일대 공공지원 사무실
- 2) 선거인명부, 후보자 확정 공고 : 2026. 02. 09.(월)
- 3) 선거일, 서면(우편) 전자투표 공고 : 2026. 02. 11.(수)
- 4) 서면(우편) 투표 전자투표 기간 : 2026.02.12.(목) ~ 2026.03.05.(목) (17시까지)
- 5) 선거일 : 2026. 03. 06.(금) (10:00~17:00)

나. 선출 방법

1) 선거를 통해 선출

- ①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, 서면(우편) 전자투표 및 현장 투표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(단일 후보자인 경우 찬반 투표)

8. 위원 선임 일정 및 방법

가. 선임 일정(※ 선임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- 1) 공개 추첨 : 2026. 03. 06.(금), 17시 / 응암동755번지 일대 공공지원 사무실

나. 선임 방법

- 1) 공개 모집 후 후보자들의 주거유형 및 동별, 통·반별, 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,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 할당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임
(※ 후보자 수가 정수 이내의 경우 전원선임으로 공개 추첨 생략)

9. 위원 등의 활동 기간 및 직무

가. 활동 기간 : 조합설립인가 시까지

나. 직무

- 1) 위원 등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※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- 2) 위원 등은 동일한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·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·위원 또는 직원을 경할 수 없다.

10. 기타사항

가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해촉함

- 1)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) 자진사퇴를 원하는 경우
- 3) 사전선거운동 또는 특정인이나 집단을 추대·구성 등의 행위와 이를 자처하는 행위 등 주민협약체 구성 취지나,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4) 기타 회의시 진행방해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11. 공고방법 :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 게시, 토지
등소유자 개별 등기우편발송

※ 제출서류 중 서식(후보자 등록 신청서,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, 이행각서, 후보자 정견서, 선거공보 작성(안))은 응암동 755번지 일대 재개발
사업 공공지원 사무실(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15, 2층)에 비치
되어 있으며, 은평구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ep.go.kr>) ‘소식·알림 → 고시
/공고’ 또는 응암동 75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정보몽땅
(<https://cleanup.seoul.go.kr/cafe/mainIdx.do?cafeUrl=eungam755>)에서도
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.

12. 문 의 :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과 재개발팀(☎ 02-351-7462)
응암동 755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사무실(☎ 02-372-8959)